

산 학 협 동 협 약 서

충북대학교병원(이하“갑”이라 칭한다)과 청주대학교(이하“을”이라 칭한다)는 효율적인 학생 현장실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갑”과“을”상호간에 산학협동을 통하여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호협의 하에 조정하도록 한다.

제3조(“갑”의 의무·권리) 병원은 효율적인 학생실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제공한다.

1. “갑”은 실습생이 지켜야 할 “갑”의 제 규정 및 제반준수사항에 대해 실습 개시 전에 실습생에게 공지한다.
2. “갑”은 학생의 실습을 위해 필요한 장소와 물품의 사용을 허용하며, 학생의 실습을 위해 최대한 협조한다.
3. “갑”은 학생의 현장실습을 지도하고, 실습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학교에 통보한다.
4. “갑”은 학생의 실습을 위해 필요한 탈의실과 회의실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제4조(“을”의 의무·권리) 학교는 효율적인 실습과 병원 방침의 준수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을”은 “갑”의 실습동의를 확인한 후 실습개시 2주일 전(후)에 실습계획서와 실습생 명단을 “갑”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을”은 실습개시 2주일 전에 “갑”에게 실습지도비(10,000원/인/주)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을”은 실습생이 “갑”의 간호방침과 제 규정 및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4. “을”은 실습기간 중 지도교수를 파견하여 실습학생을 지도하도록 한다.
5. “을”은 실습생으로 하여금 실습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여 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6. 실습 중 학생의 고의 혹은 과실로 “갑”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고 “을”이 책임을 진다.



7. “을”의 행사일(개교기념일, 축제일 등)에도 실습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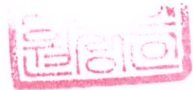
제5조(상호협약의 조정) 본 협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의 세부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1. 실습부서 선정
2. 실습기간 및 시기
3. 실습지도비

제6조(준용)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본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각1부씩 보관한다.

2016년 01월 03일



“갑” 충북대학교병원장 조명찬



“을” 청주대학교총장 김병기

